

기업형IRP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사 용 자: _____

운용관리기관: _____ 유 안 타 증 권

이하 “가입자”라 합니다)와 유안타증권주식회사(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제05-030-5호,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합니다)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하게 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의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관리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합니다)에서 법에서 정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합니다)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이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의 해당 근로자로 합니다.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에 근거하여 가입자와 법에서 정의한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에 근거하여 가입자와 법에서 정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5.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 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6. “대기성자금”이란 가입자가 제7조에 따른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운용방법을 말하며,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는 대기성자금을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조 (운용관리업무)

-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운용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4.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5.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6. 기타 운용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회사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이하 “기록관리업무”라 합니다)를 시행령이 정하는 인적 및 물적 요건을 갖춘 자(이하 “기록관리기관”이라 합니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위탁에 대해서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합니다.

제 3 조 (계약의 체결)

-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의 체결시 고용된 사업장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는 사용자의 확인서(이하 “특례적용확인서”라 합니다) 및 근로자대표의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가입자는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하기 전에 자산관리기관에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형태로 이 제도의 계정(이하 “계정”이라 합니다)을 개설하고 그 내역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계약기간)

-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가입자가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해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 한, 변경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 가입자는 고용된 사업장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가 배제된다는 사용자의 확인서(이하 “특례배제확인서”라 합니다) 및 근로자대표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가입자 및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관리업무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③ 가입자는 회사가 이 계약상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회사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반기 () 회 금융상품의 과거 적립금 운용실적이나 운용방침 등을 비교 검토한 후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운용방법별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6 조의 2 (가입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제공)

- ① 회사는 가입자에게 법 제21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② 제항에 따른 정보제공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산배분현황, 위험·수익 구조,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 나.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 다. 예금자보호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3 제2항부터 5항까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3 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 ③ 회사는 가입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제 6 조의 3 (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및 변경)

- ① 가입자는 제6조의2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② 가입자는 제항에 따라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가입자별로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만 선정해야 합니다.
- ③ 제항에 따른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회사가 법 제21조의2제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의 4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 및 통지)

- ①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한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해야 합니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최초 부담금을 납입한 날의 익영업일
 2.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 경과한 날의 익영업일
- ② 회사는 제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1.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2.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6조의2 제2항 각 호의 정보
 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언제든지 제5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가입자가 제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봅니다.
- ④ 가입자가 제6조의3 제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1.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여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부담금 납입 익영업일에 대기성자금으로 투입
 2. 가입자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 익영업일에 대기성 자금으로 투입
- 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 제21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의 5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 ① 회사는 법 제21조의3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6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② 제항에 따른 가입자 통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
 2.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3. 변경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
 4.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5.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제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변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6 조의 6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 ① 회사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 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1. 승인취소 사유
 2.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택한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회사는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1.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영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 ⑥ 회사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로 인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변경될 때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가입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적립금 운용지시)

- ① 가입자는 매 분기 ()회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운용방법 중에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지시(이하 "운용지시"라 합니다)를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을 통한 방법
 2. 회사의 영업점을 통한 방법
 3. 가입자가 직접 전자서명을 통하여 표시한 운용지시
 4.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
- ② 운용지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정기 운용지시는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회사에 납입하는 부담금의 투자 비율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시 운용지시는 정기 운용지시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금융상품을 가입자가 임의로 다른 금융상품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가입자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 ④ 회사는 가입자에게 운용중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부속합정서 제2조 제2항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고 합니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운용지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회사는 제4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제6조의4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6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용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가입자 적립금 운용은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개별 상품 약관에 별도의 약정사항이 없는 경우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됩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⑥ 제4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⑦ 가입자가 수시 운용지시에 의하여 다른 금융상품으로 교체 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2항 제1호에서 설정한 부담금 투자 비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수시 운용지시 이후에 정기적인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에는 수시 운용지시가 아닌 현재 설정되어 있는 부담금 투자 비율대로 운용됩니다.
- ⑧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가 선정 및 변경한 적립금 운용방법에 판매 중단 등의 사유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사는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가입자는 운용지시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 ⑨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운용지시하는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른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고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 사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⑩ 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구성상품을 개별적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부담금의 납입)

-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 가입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부담금
- ② 가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외에도 기존 퇴직금 사내유보금의 이전, 퇴직일시금신타(퇴직보험 포함)으로 부터의 계약이전, 및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및 급여이전 등에 의한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③ 사용자는 제1항의 사용자부담금을 별도로 정한 기일(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기일 다음날부터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부담금 납입시기까지 자산관리기관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납입을 최고(독촉) 하여야 합니다.
- ⑤ 가입자는 제1항제호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부담금납입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운용지시의 전달)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지시지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 10 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① 회사는 가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다음 각 호의 적립금 운용현황을 매년 1회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1. 가입자의 적립금 총액 및 자산관리기관별 적립금액
 2. 가입자의 운용방법별 투자금액, 투자비율, 운용수익률, 운용기간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2. 교부
 3. 정보통신망
 4. 기타 회사가 가입자와 합의한 방법
-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규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 11 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 ① 가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하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 등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입자는 그 내용을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2 조 (개인정보의 취급 및 제공)

-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합니다)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가입자의 급여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용관리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 ①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 2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 등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를 부담하는 경우. (단, 중도인출의 경우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담보제공 한도는 가입자 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다만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것에 따릅니다.

제 14 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 ① 회사는 법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가입자에게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합니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2.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3.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4. 회사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청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업무 중 일부를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급여의 지급)

- ① 가입자는 사용자로부터 퇴직 등을 나타내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를 통해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지시를 전달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요청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가 급여를 직접 지급받지 않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또는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의 이전(이하 "급여이전"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급여이전을 위한 연금자산의 매각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 ⑤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부담금에 의한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6조 (계약의 이전)

- ① 가입자가 사용자에게 계약의 이전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의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이 계정의 적립금을 다른 계정 또는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 ③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일 내에 계약이전 신청을 위한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0조(면책)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운용지시기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 17 조 (계약의 중도해지)

- ① 가입자 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해지(이하 "특별중도해지"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가 고용된 사업장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근로자수의 감소,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전환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사용자의 특별배제확인서 및 근로자대표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가입자가 고용된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3.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회사가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② 회사는 계약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기재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이하 "일반중도해지"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 각호의 사유로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18 조 (수수료의 지급)

- ① 회사는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수수료를 부속협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합니다.
- ② 가입자가 제1항의 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를 위한 운용지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회사와 수수료 납부를 위한 자산매각순서를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순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인감신고)

-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날인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된 확인수단(인감 등)과 사용한 확인수단이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여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부터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를 받아 실시한 사무처리
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청구·통지·신청 또는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사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제 21 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 ① 가입자와 회사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속협정서를 작성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 22 조 (조항의 해석 및 변경 등)

-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 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 ③ 제2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 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가입자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⑥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⑦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서의 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3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관할법원)

가입자 또는 회사가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의 주소지 또는 가입자가 거래하는 회사의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 25 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감독규정 및 회사의 내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 27 조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가입자와 회사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 ① 2012년 7월 25일 이전의 개인퇴직계좌(기업형)는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으로 봅니다.
- ②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개인퇴직계좌(기업형)를 설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2013년 7월 26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부터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적용하고, 2013년 7월 25일까지 발생하는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③ 2013년 2월 27일 이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운용관리 수수료 할인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④ 2016년 8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7조 제5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⑤ 시행일 전에 체결한 기업형RP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변경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연 기준)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단, 2025년 2월 1일 개정 시행되는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의 경우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즉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2024년 1월말 기준 회사와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경우, 회사가 이 계약의 수수료 할인 적용 가능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할인 적용이 가능한 계약으로 확인된 경우, 증빙서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을 이 계약서의 시행일로 하여 증빙서류없이 할인을 적용합니다.
- ④ 2025년 2월 1일 개정 시행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혜택은 2024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제 3 조 (자동재예치의 유효기간)

- ① 법률 18752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의 만기 예정일의 직전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재예치 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재예치의 효력기간은 2023년 7월 11일까지로 적용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한 경우라면 선택한 이후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가입자 : (인)

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LO CHIH PENG (인)

[부속협정서]

(이하 "가입자"이라 합니다)와 유안타증권주식회사(퇴직연금사업자 등
 록번호 제05-030-5호,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합니다)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하게 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
 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의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관리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 1 조 (운용관리업무 등의 일부위탁)

- ① 회사는 계약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부 업무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업무
 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제2조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업무
 기록관리기관:
 2. 계약서 제14조 제1항의 업무
 전문교육기관:
- ② 회사는 운용관리업무 등의 일부위탁시 계약서 제12조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비밀유지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부과해야 합니다.

제 2 조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기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운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운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와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한 것
 4. 다음과 각목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 가.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
 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 나. 국제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기타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다. 가목 및 나목의 운용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
 5.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금, 적금, 최저보장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증권(원리금보장형에 한합니다), 발행어음, 표지어음
 2. 국제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채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 및 ETF를 포함하며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표기함)
 11. 파생결합증권(원리금보장형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을 말합니다)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자와 회사가 협의한 운용방법
- ③ 회사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사항
 - 가. 운용방법에 관한 이자, 배당 및 그 외의 이익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나. 운용방법별 투자위험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5년간(당해 운용의 과거에 있어 취급기간이 5년이 안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취급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관련 실적
 3. 운용방법에 관한 적립금의 투자단위 또는 상한액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한 사항
 4. 가입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방법
 5.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소요되는 수수료, 기타비용의 내역 및 그 부담방법
 에 관한 정보
 6.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7. 기타 가입자 등이 운용의 지시를 실시하기 위한 정보
- ④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은 서면,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제 3 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 ① 회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합니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에 관한 사항
 -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라.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절차
 -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 바. 제도의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 사. 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제도운용현황에 관한 사항
 -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입시기 및 납입상황
 - 나. 분산투자, 적립금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 다.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 라. 표준형DC 추가 가입자교육에 관한 사항
3. 기타사항
 - 가.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지급절차
 - 나. 중도인출 처리절차
 - 다. 수급권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계약이전절차
- ② 회사는 가입자에게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3조 제1항의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을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
 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합니다.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의 가입자교육은
 서면 또는 집합교육으로 교육한다.
- ④ 회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추가 교육사항을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함
 니다.
 1. 집합교육
 2. 온라인교육
 3. 서면교육
 4. 전자우편

제 4 조 (수수료의 종류)

- ① 가입자가 회사에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및 기타 필요한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계약서 제18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수수료는 매년도 말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일 또는 직
 전 계산기준일 익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까지의 적립금 자산 평가액 평균 잔액(이하 "
 적립금 평잔"이라 합니다)에 다음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적립금 평잔	수수료율	수수료 산출 예시
1억원 이하	0.20%	적립금 규모 5억원 가정시 운용관리수수료 = 1억×0.20%+(5억-1억)×0.18%
1억원 초과	0.18%	
 - 가.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대한 운용
 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적립금 평잔으로 하고 가입자
 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징수대상금액은 가입자부담금으로 구성된 적립금 평잔으로
 합니다. 이때 해당 적립금 평잔에 적용할 수수료율은 사용자부담금과 가입자부담금
 각각의 적립금 평잔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 나.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부터의 계약이전이 있는 경우 이전되는 금액
 에 대해서는 계약초년도에 한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계약초년도 중
 계약해지/이전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다.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을 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계약이전일, 중
 도해지일의 계약이전신청금액, 중도해지신청금액에 대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징구함
 니다. 이때, 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사용자별 직전 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당해 수수
 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라.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경과년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단, 중도해지 시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중도해지일까지 발생한 경과수수료에 대한 장
 기할인은 제외됩니다.)

계약년수	할인율
2차년도 ~ 4차년도	10%
5차년도 ~ 9차년도	12%
10차년도 이후	15%

2.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운용관리수수료

제1항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우대 할인율을 적용하
 여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할인율을 적용한 수수료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
 올림합니다

적립금 평잔	중소기업 (할인율 10%)	사회적기업 (할인율 80%)
1억원 이하	0.18%	0.04%
1억원 초과	0.16%	0.04%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1호의 기준에 관한 차등적인 세부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호 가목의 부과기준을 수립하여, 원리금보
 장형상품(예금, RP, 증권금융예수금, ELB/DLB 등)으로 운용된 적립금 평잔에 대해 연

0.01%p 할인금액을 산출하여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서 차감합니다. 할인금액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구분	할인율	할인금액 산출 예시
운용관리수수료 할인금액 (원리금보장형상품)	0.01%p	원리금보장형상품 적립금 규모 500억원 가정시 운용관리수수료 할인금액 = 500억×0.01%

-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 금액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방법에 의해 계산된 수수료 금액이 1,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④ 사회적기업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중소기업 수수료 할인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익영업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를 10% 할인 한 제1항 제2호의 운용관리수수료를 적용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익영업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를 80% 할인한 제1항 제2호의 운용관리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제1항의 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당사의 여타 기업 대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이 가장 낮은 부과기준을 적용합니다.
 3.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의 만료, 취소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제외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대기업 전환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기업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인증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2024년 4월 1일 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회사가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임을 확인한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증빙서류 제출에 의해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합니다

제 5 조 (수수료의 납입시기 및 방법)

- ① 계약서 제8조의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② 제 4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 매 사업연도 말 기준 1월 이내
- ③ 회사는 사용자에게 수수료 납입기일 10일 전에 수수료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회사가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회사가 가입자의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징수합니다.
- ④ 계약이전, 중도해지 등의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수수료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회사가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회사가 가입자의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징수합니다.
- ⑤ 계약서 제18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수수료 지급을 위한 자산매각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합니다.
 1. 현금성 자산
 2. 환매조건부채권(1년물)
 3. MMF
 4. 주가연계증권(ELS)
 5. 국내수익증권(채권형>채권혼합형>주식혼합형>주식형)
 6. 해외수익증권(채권형>채권혼합형>주식혼합형>주식형)
 7. 단일 또는 복수의 집합투자증권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8.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되거나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이 혼합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
 9. 정기예금
 10. 채권 등 실물 유가증권
 11. 제1~10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산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매각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부속합정서의 작성 및 보관)

가입자와 회사는 이 부속합정서를 2부 작성하고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가입자 :

(인)

회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LO CHIH PENG

(인)